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트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유

1. 운용전문인력 변경 : (안홍익, 조상현 → 안홍익, 조상현, 김정훈)
2.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3. 반기기준으로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16년 1월 20일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안홍익, 조상현	안홍익, 조상현, <u>김정훈</u>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6.1.4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2) 동일종목 투자	<p>나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</p> <p>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·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·어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,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<u>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</u></p>	<p>나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</p> <p>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<u>기업어음증권</u>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·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·어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,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<u>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</u></p>



	<p>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	<p>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</p>
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2) 동일법인 투자</p>	<p>(3)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 시가총액 비중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(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)투자하는 경우</p>	<p>(3)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 시가총액 비중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(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)투자하는 경우</p>
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5) 집합투자증권 투자</p>	<p>나)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	<p>나)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
<p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기재	2015.12.26 기준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기재	2015.12.26 기준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반기 기준으로 기재	2015.12.26 기준
<p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	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</p>



	<p>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 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	<p>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<u>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</u>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 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</p>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- <u>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</u></p>